제297회 임시회 2011. 1. 27.(목)

#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 27.(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1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월 20일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

####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2조)
  -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 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안 제4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손자용)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함.
- 안 제4조에서는
  - 지방세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금번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발전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 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충청북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충청북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 제3조(기금의 관리) 충청북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3.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 가. 1만분의 1
    -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 가. 1만분의 1.5
  -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 다.
  -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지방세 연구 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 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 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 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